

〈일반논문〉

우생학, 국가, 그리고 생명정치의 여러 형태들, 1865-1948*

김 호 연 **

〈목차〉

- I. 들어가며
- II. 민주주의 국가들: 영국과 미국
- III. 전체주의 국가들: 독일과 일본
- IV.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V. 나오며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에서 탄생하여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 사이 (1865-1948) 세계적으로 확산된 우생학 운동(eugenics movement)의 역사적 궤적을 ‘국가’(state)라는 인식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생학이 단순히 개인의 적합성(fitness) 확보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적합성을 위한 과학으로 기능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통치도구로서의 과학지식, 특히 생의학적 지식이 갖는 유의미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는 우생학사 연구의 의제 확장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5181)”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부교수

통해 우생학史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가 될 것이고, 우생학 관련 후속 담론의 창출과 생의학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들의 유효성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명정치(bio-politique)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우생학적 법률을 제정했던 나라들을 민주주의 국가(미국과 영국), 전체주의 국가(독일과 일본),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로 구분하여 생물학적 국가주의(biological statism)가 전개되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 주제어

우생학, 생물학적 국가주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I.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England)에서 탄생하여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 사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우생학 운동(eugenics movement)의 역사적 궤적을 국가(state)라는 인식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우생학史 연구는 우생학이 과학과 이념 사이, 이론적으로는 유전과 환경 사이,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에서 부유하며 각각의 편의나 이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실천으로 이어졌음을 밝혀주었다.¹⁾ 그러나 우생론자들은 퇴화 관념과 생물학적 통제를 통한

1) 여기서는 우수한 형질의 보존과 유지 및 개선을 추구하는 우생학은 포지티브

사회 진보 실현, 그리고 국가 적합성(fitness) 확보라는 이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생학은 수용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정책으로 활용되어 국가 효율(National efficiency)을 달성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²⁾

우생학을 국가라는 장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생물학과 권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와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의 생의학적 조치가 갖는 유의미성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생학이 단지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나 복지국가에서도 수용된 까닭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의 생명정치(biopolitics)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해보는 것이다.³⁾ 다 알다시피, 생명공학기술 발전과 그것의 생명 과정에의 개입은 개인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중요한 토대가 된 지 오래이다.⁴⁾ 이 과정에서 우생 담론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스며들고 있다.

(positive) 우생학으로, 우수하지 못한 형질의 배제와 제거 목적을 갖는 우생학은 네거티브(negative) 우생학으로 지칭한다. 기존 우생학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서울: 아침이슬, 2009), 23-37쪽; 김호연·박희주, 「우생학의 다층적 접근: 유전, 환경, 그리고 이념」, 『환경법연구』 27-2 (2005), 139-158쪽.

2) Deborah Harrett and Charles Kurzman, "Globalizing Social Movement Theory: The Case of Eugenics," *Theory and Society* 33 (2004), pp. 487-527; David Mitchell and Sharon Snyder, "The Eugenic Atlantic: Race, Disability, And The Making of An International Eugenic Science, 1800-1945," *Disability & Society* 18 (2003), pp. 843-864.

3) 필자는 생명정치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이념과 일련의 생의학적 지식과의 연계 속에서 집합적 실재로서의 인구 수준에서 생명 과정에 개입하는 일련의 통치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는 우생학과 연결되어 설명될 때, 더욱 명확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4) 최근 개인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민간 기업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DTC, direct-to consumer)이라든지 빅 데이터(big data) 기반 의료 및 생체 정보를 활용한 헬스 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정부 주도로 일어나고 있기도

이는 우생학이 지나간 과거의 텍스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현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⁵⁾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일부 서양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우생학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속적인 연구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다.⁶⁾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천착하여 생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역사적 분석의 테마로 삼는 연구도 아직은 부족하다.⁷⁾

이에 여기서는 민주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구분하여, 미국(America) · 영국, 독일(Germany) · 일본(Japan) 및 덴마크(Denmark) · 노르웨이(Norway) · 핀란드(Finland) · 스웨덴

- 하다. 그 밖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서울:알렘, 2014); 김병수, 『한국 생명공학 논쟁』 (서울:알렘, 2014).
- 5) 토마스 렘케, 심성보 옮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15).
- 6) Jo Youngran, "Eugenics, Public Health, and the Control of Tuberculosis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한국과학사학회지』 15 (1993), 211-224쪽; 이성숙, 「산아제한과 페미니즘 -애니 베상트 사건과 맬서스주의」, 『영국연구』 8 (2002), 33-61쪽; 이성숙, 「영국 빅토리아 시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적 담론: 남녀클럽(1885-1889)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 (2004), 39-65쪽; 염운옥, 「우생학과 여성」, 『영국연구』 13 (2005), 89-117쪽; 廉雲玉, 『イギリス優生學運動と母性主義 -1907年から1930年までの「優生協會」の活動を中心に-』, 東京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4; 염운옥, 「20세기 초 잉글랜드의 이혼법 개정과 우생학」, 『역사비평』 64 (2003), 281-302쪽;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단종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12 (2004), 235-271쪽; 염운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서울: 책세상, 2009); 박진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미국의 우생학 연구」, 『서양사론』 제90호 (2006), 185-186쪽; 정세권, 「인간에 대한 "미국식 과학"의 형성: 대번포트(Charles Benedict Davenport)의 우생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0권 1호 (2008), 139-169쪽; 박지현, 「양차대전의 생명담론과 프랑스 우생학」, 『한국서양사학회학술대회발표집』 12 (2008), 85-99쪽.
- 7) 2009년 서양사학회가 주관한 「서양역사 속의 몸과 생명정치」라는 학술대회는 몸과 생명정치에 대한 서양사학자들의 집단적 문제의식과 관심사, 그리고 질적인 연구 수준을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유기, 「은밀하지만 공적인 몸에 대한 역사가들의 질문들」, 『서양사론』 112호 (2012), 348-353쪽;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몸과 생명정치로 본 서양사』 (서울: 푸른역사, 2011).

(Sweden)에서 생물학적 국가주의(biological statism)가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⁸⁾ 20세기 전환기 서구 유럽 국가들의 지상 목표는 국가 효율과 사회 진보에 있었고, 이는 과학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컸으며, 우생학은 이 과정에서 인구 집단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정책 도구로 기능했고, 법률은 이를 강제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생학은 의학적 조치나 건강 담론과 착종되어 그것의 폭력성은 은폐된 측면이 있다. 이 논의를 통해 필자는 우생학사 연구 및 생명정치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민주주의 국가들: 영국과 미국

다 알다시피 우생학이 탄생한 곳은 영국이었지만, 우생학적 법률 제정과 실행이 가장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이었다.⁹⁾ 미국의 우생 입법은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와 결부된 정책을 시행한 독일이나¹⁰⁾ 일본,¹¹⁾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Scandinavian

8) 여기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우생학은 기존 연구가 많아 이를 기초로 소략하게 핵심만을 전하고, 일본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우생학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임을 밝혀둔다.

9) 미국 우생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133-157쪽; 김호연, 「20세기 초 미국의 과학과 법」, 『서양사학연구』 26 (2012), 111-143쪽.

10) Das 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1933); Nuremberg Law(1935, Blood Protection Law, Marital Health Law, Reich Citizenship Law).

11) 國民優生法(1940) 및 優生保護法(1948).

states)¹²⁾에도 영향을 주었다.¹³⁾ 미국은 남북 전쟁(Civil War, 1861-1865) 이후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천착했고, 이는 이른바 혁신주의의 국가 건설에 대한 야심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생학은 일련의 사회개혁과 쉽사리 연결되었고, 국가효율, 과학에 대한 믿음, 전문가주의, 그리고 정부에 의한 사회 통제가 자연스레 연동되었다.¹⁴⁾ 1895년 코네티컷(Connecticut) 혼인법(Marriage Law)은 이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20세기 전환기 미국에서 혼인은 국가 정체성과 효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시민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초였다. 이 법은 여성이 45세 이하이고, 정신박약(feble-minded), 치우(imbecile, 지능이 천지idiot보다 높고, 노둔moron보다 낮아 3-7세 정도의 저능자), 간질이 있는 남녀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⁵⁾ 이 법은 후일 많은 주(州)의 우생학적 혼인 조항의 기초가 되었고, 많은 주(州)에서 공공의 건강과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시

12) 덴마크 단종법(1929)과 정신장애법(1934), 노르웨이 단종법(1934), 핀란드 단종법(1934 & 1950)과 거세법(1950), 그리고 스웨덴 단종법(1934 & 1941).

13) 물론 이들 국가만이 우생학적 법률을 제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위스 정신 장애 결혼 금지 조항(1907), 뉴질랜드 정신 장애법(1911), 영국 정신 결함법(1913),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신 장애법(1916), 멕시코 친족법(1917), 소련 정신 질환자들의 결혼 금지 조항(1926), 스위스 강제 단종법(1928), 캐나다 성별 단종법(1928), 멕시코 Veracruz 단종법(1932),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단종법(1933), 이란 결혼 전 건강 증명 의무화(1938), 프랑스 혼전 의료 검사를 포함하는 모성 및 아동 보호법(1942). 이 내용은 Alison Bashford and Philippa Lev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559-567 및 Ruth Clifford Engs, *The Eugenics Movement: An Encyclopedia*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5), pp. 231-252에서 정리했다.

14) 미국의 혁신주의의 국가 건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진빈, 『백색국가건설사』(서울: 엘피, 2006), 10-27쪽.

15) Connecticut General Statute 1354-1356 (1895). 단종법은 1918년에 제정되었다. Connecticut General Statute 2691.

행되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 초 이민제한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¹⁶⁾ 이들은 “거리의 부랑자들은 대체로 쓰레기인데, 이들 대부분은 사회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존재들이고, 정신박약에 처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외국 태생이다. 만일 우리가 국가의 유전적 질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이민자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효과적인 구원의 전략이 될 것”¹⁷⁾이라고 보았다. 당시 이민 제한은 부적격한 이민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퇴화나 역선택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우생학적 논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이민 제한 입법은 1921년 이민법(Johnson Act)과 1924년 이민법(Johnson Reed Act)이었다. 두 이민법은 기존의 이민법을 단순히 수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두 법은 우생학적 예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¹⁸⁾ 열등 인종에 대한 우생학자들의 예증은 노동권, 도시 빈곤, 전쟁, 범죄, 질병, 그리고 인종 간 접촉에 의한 백색 공포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¹⁹⁾

16) Calvin Coolidge, “Whose Country Is This?,” *Good Housekeeping* 72 (1921), pp. 13–14; J. B. Peabody, “Putting It Up to Philanthropy,” *The Survey* 29 (1912), pp. 98–99; Richmond Mayo-Smith, *Emigration and Immigration* (New York: Scribner’s, 1908).

17) Hiram M. Stanley, “Our Own Civilization and the Marriage Problem,” *The Arena* 2 (1890), pp. 94–100, esp. p. 95

18) 미국의 대표적인 우생론자인 러플린(Harry H. Laughlin)은 1920년 4월 이민 및 귀화위원회 청문회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생물학적 근거를 통해 남동유럽인들의 이민규제를 주장했다. Harry H. Laughlin, *Biological Aspects of Immigration* :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House of Representatives Sixty-Sixth Congress Second Session April 16–17, 1920 Statement of Harry H. Laughlin [graphic]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26432 1921), p. 7, 8, 15, & 17–18.

19) R. D. Ward, “Eugenic Immigration: The American Race of the Future

뒤이어 미국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우생 입법인 단종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생학적 부적격자(the unfit)가 태어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미국 인종의 질적 하락을 막고,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것이었다. 1924년 버지니아(Virginia)주에서 단종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개인 건강과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신박약자들에 대한 강제 불임화 수술을 규정했다. 이 법에서는 단종 방법으로 남성은 정관절제(vasectomy), 여성은 난관절제(salpingectomy)를 제시했고, 이는 정신박약자의 확산이 사회 공포를 가져오고, 정신이상, 치우, 천치, 간질, 범죄는 유전되므로, 병원에서의 판정이 있다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이 법에는 병원의 판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상소할 수 있는 기간도 명시하고 있었다.²⁰⁾ 이 법은 벅 대 벨 사건(Buck v. Bell Case, 1927)을 통해 합헌이 되었고,²¹⁾ 판결 이후 1937년까지 총 32개주에서 단종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강제 불임화 수술을 당한 사람들은 알려진 것만 65,280명에 이른다.²²⁾ 미국에서 제정된 우생 입법은 과학과 법률이 상호 연동되어 인간의 삶과 권리가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outhern States for Its Formation: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merican Breeders Magazine* 4:2 (1913), pp. 99-101.

20) Virginia Acts of Assembly, Chap. 394, 1924[S B 281](1924.3.24통과).

21) 이 재판의 판결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Buck vs. Bell*, Superintendent of State Colony for Epileptics and Feeble Minded, Decided May 2, 1927, 274 U.S. 200.

22) 미국에서 단종법 제정 주는 1935년 총 28개 주였다. 다음과 같다. 알라배마,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사스,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 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레곤,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사례였고, 이후 여러 국가의 우생학적 실천 모델로 제시되었다.

반면 우생학의 종주국인 영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우생학적 조치는 상대적으로 약했다.²³⁾ 영국은 19세기 말 일련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1870년대 이후 독일과 미국의 경제적 부상 때문에 세계 경제 무대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했고, 국내 경제의 상황도 대불황(great Depression, 1873-1896)을 겪으며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했다.²⁴⁾ 사회적으로도 영국은 19세기 전반부터 심화된 빈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빈곤 문제는 이후 실업과 연계됨으로써 영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다.²⁵⁾ 정치적으로도 영국 사회는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급격한 경제 악화와 실업과 빈곤의 심화, 그리고 숙련 노동자의 조직화 등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산계급에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섰다. 이는 국가 효율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영국에서 국가효율을 주창했던 이들은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과학을 신뢰하고, 효율적인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제국에 걸맞는 인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²⁶⁾ 우생학은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 사회 내에 스며들었다.

23) 영국 우생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김호연, 「19세기말 영국 우생학의 탄생과 사회적 영향 - 국가적 효율과 우생학적 건강 -」, 『이화사학연구』 36 (2008), 233-259쪽.

24) 19세기 중후반의 영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나종일·송규범, 『영국의 역사(하)』(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625-655쪽.

25) 최재희, 『영국 노동당 창당기 사회주의 진영의 민주주의관』(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1쪽.

26) 국가 효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태숙, 「100년 전의 국가적 표어들: 영국의 “국가효율” 對 일본의 “國粹保存”」, 『영국연구』 창간호 (1997), 211-233쪽, 특히 214쪽.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우생학 운동은 정신박약자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 결함법(Mental Deficiency Act, 1913)을 제정한 것이었다. 이는 앞서 말한 19세기말 일련의 위기와 인종 퇴화에 대한 대응물이었다. 무엇보다 이 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성은 국가가 직접 우생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 우생학 관련 단체들이 산아제한(birth control) 운동을 전개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들이 산아제한을 우생정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으로의 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우생 교육 협회(Eugenics Education Society)를 중심으로 영국의 산아제한론자들은 피임지식 보급과 피임약 개발을 위해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단종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갔다.²⁷⁾ 영국에서 188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아제한 운동은 신말투스주의(Neo-Malthusian)와 우생학을 기초로,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단종을 의무화하고, 빈곤층의 출생률은 억제하며, 우수한 사람에게는 출산을 권장했다. 모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던 일부 신말투스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우생학을 수용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과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⁸⁾ 그러나 정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단종법안(Voluntary Sterilization Bill)은 제정되지 못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단종법 제정은 공익 실현을 명분으로 주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적인 차원의 단종 수술로 발전할 개연성이 컸다. 반면 영국은 우생학 운동의 초창기부터 강제적인 단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물론 실제로는 영국에서도 우생학적인 이유로 단종수술이 행해지고 있었다. 비록 영국에서는 단종법 제정은 없었으나, 교육²⁹⁾이나 공중보건·주택개선·정신건강·

27)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 247쪽.

28) 이성숙, 「산아제한과 페미니즘」, 53-54쪽.

29) 1893년 제정된 초등 교육법(Elementary Education Act)이나 1902년의 교육법

위생개혁 등 포괄적인 사회개혁의 측면에서³⁰⁾ 우생학적 이상을 활용하여 국가 효율과 사회 진보를 달성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대동소이했다.

III. 전체주의 국가들: 독일과 일본

독일에서는 우생학이 인종 위생(racial hygiene)이라 불렸고, 이는 19세기말 독일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사회문제 및 노동자계층과 엘리트계층 사이의 상대적인 출산율 차이를 극복하려는 생의학적 차원의 조치로서 대두되었다.³¹⁾ 때문에 초기의 독일 인종위생은 엄격하게 생의학에 기반을 두었고, 인종적이고 정치적인 색깔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인종위생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대공황(Great Depression, 1929)의 여파로 점점 인종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나치(Nazi)의 집권이후 극단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우생학적 입법은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³²⁾

(Education Act)에서는 시청각 장애자를 특수교육 대상으로 정한 것도 우생학적 논리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D. G. Prichard, *Education and the Handicapped 1760-196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30) 이는 중산계급이 갖는 하층민들에 대한 박애주의와 사회적 편견이 동시에 적용된 결과였다. Dorothy Porter, "Enemies of the Race: Biologism, Environmentalism, and Public Health in Edwardian England," *Victorian Studies* 34 (1991), pp. 159-178.

31) 독일의 인종위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재구성했다. 김호연, 「과학의 정치학: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 『강원인문논총』 18 (2007), 29-62쪽.

32) 독일의 인종위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heila Faith Weiss, "The Race Hygiene Movement in Germany 1904-1945," in Mark B. Adams (ed.), *The*

독일에서는 1927년 독일 범죄 법전(the German Criminal Code)이 준비되어 1933년 공식적인 첫 단종법이 제정된다. 이 법은 유전성 질병 자손 출산 금지법(the 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으로 독일인을 대상으로 삼고,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이 법은 후일 일본의 우생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³³⁾ 당시 이 법에서 규정한 단종 대상 질병에는 유전성 질병에서 정신박약, 빈곤, 그리고 알코올 중독처럼 유전성이 불분명한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특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³⁴⁾ 1935년에는 뉘른베르그법(Nuremberg Law)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는 인종주의가 녹아들어 있었다. 이 법은 혈

Wellborn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9–10; Benno Muller-Hill, *Murderous Science: Elimination by Scientific Selection of Jews, Gypsies, and Others, Germany 1933–19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Robert N. Proctor, *Racial Hygiene: Medicine Under the Naz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Gotz Aly, Peter Chroust, and Christian Pross, *Cleansing the Fatherland: Nazi Medicine and Racial Hygien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Michael H. Kater, *Doctors Under Hitler*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33) Kawashima Sachio, “Nazi Sterilization Law and Japan,” in Karen J. Schaffner (ed.), *Eugenics in Japan* (Fukuoka: Kyushu University Press, 2014), pp. 83–93.

34)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추산한 질환별 단종 대상은 대략 유전성 정신박약(Hereditary feeble-mindedness) 200,000명, 정신분열(Schizophrenia) 80,000명, 간질(Epilepsy) 60,000명, 조울증(manic-depressive psychosis) 20,000명, 중증 신체장애(Serious physical deformities) 20,000명, 유전성 청각장애(Hereditary deafness) 16,000명, 유전성 알코올중독(Hereditary alcoholism) 10,000명, 유전성 시각장애(Hereditary blindness) 4,000명, 헌팅턴 무도병(Huntington's chorea) 600명 등 410,600명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단종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선천성 정신박약 52.9%, 정신분열 25.4%, 간질 14%, 조울증 3.2%, 알코올 중독 2.4%, 난청 1%, 시각장애 0.6%, 신체장애 0.3%, 헌팅턴병 0.2 % 였다. Anne Kerr, *Genetic Politics*, pp. 27–28.

통법(Blood Protection Law), 결혼 건강법(Marital Health Law), 그리고 제국 시민법(Reich Citizenship Law)으로 구성되었다. 혈통법은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혼지 금지를, 결혼 건강법은 결혼 허용 조건으로 건강 증명서를 의무화했으며, 제국 시민법은 독일 인구를 시민과 거주민으로 이분하여 거주민(유대인 등 비 독일계 인구)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³⁵⁾

독일의 단종법 제정은 후일 안락사(euthanasia)로 이어졌다. 독일에서 안락사는 처음에는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독일계 아동들에게 시행했다. 그러다가 1943년 성인안락사로 확대되면서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비독일 인종을 안락사 대상으로 삼았다. 아동 안락사의 대상은 하체 장애, 뇌나 척추 장애, 소아마비, 중풍, 왜소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백치, 다운 증후군, 그리고 다양한 뇌질환을 가진 아동 등 광범위했다. 성인 안락사는 이른바 T-4 프로그램³⁶⁾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의학 실험을 빙자한 대량 학살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941년 8월에 끝날 때까지 약 70,000명을 안락사 시켰다.³⁷⁾ 광적 안락사(wild euthanasia)도 시행되었다. 광적 안락사는 고령자, 반사회적 인물, 그리

35) Robert N. Proctor, *Racial Hygiene*, p. 103.

36) 이는 최초의 조직적인 안락사 시도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빌라인 No.4, Tiergartenstrasse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37) [표 1] 안락사 센터의 안락사 현황

Institution	Dates of Operation	Numbers of Deaths
Grafeneck near Stuttgart	1940, 1 - 12	9,839
Brandenburg	1940, 2 - 9	9,772
Bernburg	1941, 9	8,601
Hadamar	1941, 1 - 8	10,072
Harthheim near Linz	1940, 5	18,269
Sonnenstein in Pirna	1940, 1 - 1941, 8	13,720

Source: NAW, T 1921, Roll 18, Gotz Aly, *Cleansing the Fatherland*, p. 39.

고 외국인 대부분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잔학성이 제일 컸다. 즉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모든 이들이 안락사 대상이었다. 이 안락사는 1941-1943년 사이 시행되었고, 약 20,000명이 안락사 당했다. 이후 최종 결정 (final solution)에 의해 대학살(Holocaust)이 이루어졌다.³⁸⁾ 독일의 인종위생은 단종법 제정, 안락사, 그리고 대학살이 순차적으로 발전하여 역사에 지우기 힘든 흔적을 남겼다.

일본에서의 우생학 수용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다.³⁹⁾ 일본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과학주의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짙은 우생학을 도입했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 이후 일본 지식인들은 스펜서(H. Spencer)류의 사회진화론과 사회유기체설, 그리고 헤켈(E. Haeckel)의 일원론(Monism)을 점진적으로 수용했고,⁴⁰⁾ 대중 잡지에서

38) George L. Mosse, *Toward the Final Solution: A History of European Racism* (London: J. M. Dent and Sons, 1978).

39) 일본 우생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스즈키 겐지(鈴木善次), 『일본의 우생학(日本の優生學)』, 三共出版(1983) 및 Karen J. Schaffner, *Eugenics in Japan*을 참고하라. 일본 우생학과 파시즘의 상관성을 논한 연구로는 후지노 유타카(藤野豊), 『일본 파시즘과 우생사상(日本フェシズムと優生思想)』, かもがわ出版(1998)가 있고, 일본 우생학과 나치의 연관을 부정하는 마쓰바라 요코(松原洋子)의 松原洋子, 「民族優生學保護法案と日本の優生學の系譜」, 『科學史研究』 II, 36卷, 1997 과 松原洋子, 「〈文化國家〉の優生法」, 現代思想 25:4 (1998)도 참고하라. 그 밖에도 다음을 참고하라. Yasuko Takezawa, ed., *Racial Representations in Asia* (Kyoto: Kyoto Univ. Press, 2011); Michael Weiner, ed., *Japan's Minority: The Illusion of Homogeneity* (New York: Routledge, 2009); Suzuki Zenji "Geneticists and the Eugenics Movement in Japan," *Japanese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14 (1975), pp. 157-164; Tiana Norgren,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Yuehtsen Juliette Chung, *Struggle For National Survival: Eugenics in Sino-Japanese Contexts, 1896-1945*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40) 헤켈의 일원론은 기독교, 형이상학, 그리고 모든 형태의 비합리성을 거부하려는 일종의 과학주의였고, 유물론적 색채가 짙었다. 헤켈은 생물학과 정치학을 통합

도 우생학을 빈번하게 소개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시사소언(時事小言)』(1881),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인권신설(人權新說)』(1882), 운노 유키노리(海野幸德)의 『일본인종개조론(日本人種改造論)』(1910), 그리고 우지하라 사조(氏原佐藏)의 『민족위생학(民族衛生學)』(1914)이 출간되면서 우생학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중요한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점해갔다.⁴¹⁾

이즈음 일본적 현상이라 할 만한 논쟁이 있었다. 통상 우생학은 혈통의 보존과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이른바 じゅんけつ(純潔) 입장 vs. こんけつ(混血) 입장 사이의 대립이 있었다. こんけつ 입장은 1884년 게이오 대학의 다카하시 요시오(高橋義雄)가 주장했다. 다카하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였는데, 『일본인종개량론(日本人種改良論)』(1884)이라는 책에서 인종적으로 우수한 서구인과 잡혼을 추진해야 일본에 미래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수용하고, 문명화 달성은 일본 남성과 유럽 여성 사이의 결혼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본 여성에 비해 육체적으로 우수한 양육 조건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잡혼을 통해 태어나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일본 인종이야말로 서구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존재라 믿었다. じゅんけつ 입장은 말 그대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주장이다. 도쿄 대학의 가토 히로유키는 잡혼에 의한 인종은 인종 개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인이 유럽인보다 덜 문명화되었다는 혼혈 입장의 기

시켰고, 그 기초로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을 삼았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Ernst Haeckel, *Natürliche Schöpfungsgeschichte* (Berlin, 1868); Sang-yong, Song, "Haeckel's Monistic Philosophy of Nature," *哲學研究* 11 (1976), pp. 193-209.

41) 요코하마 다카시, 안상현·신영전 옮김, 『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서울: 한울아카데미, 2019), 71-78쪽.

본적인 전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혼혈은 인종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의 순수한 혈통을 오염시키는 일에 불과한 행위라고 보았다.⁴²⁾ 혼혈주의는 일본 우생학의 아이러니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당시 서구에서는 인종간 위계를 설정하고,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담론으로 우생학을 수용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스스로 서구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우월한 인종과의 잡혼이 열등성을 보완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이같은 믿음이 혼혈주의로 나타났던 것이었다.⁴³⁾ 물론 이러한 논쟁은 주로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 있었고, 이후 논쟁이 정리되면서, じゅんけつ 입장이 주류를 형성했다.⁴⁴⁾

일본 우생학은 주로 독일에서 유학한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전파되었고, 1905년 즈음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우생학을 소개하곤 했다.⁴⁵⁾ 1905년

42) 가토의 주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藤野豊「補論 I 近代日本と優生思想の受容」, 『日本ファシズムと優生思想』, かもがわ出版(1998), pp. 371-394, 강태웅, 「우생학과 일본인의 표상-1920-40년대 일본 우생학의 전개와 특성」, 『일본학연구』 38 (2013), 32쪽에서 재인용; 일본에서의 혼혈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朴利鎭,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GHQ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 (2018), 235-267쪽.

43) Sumico Otsubo and James R. Bartholomew, "Eugenics in Japan: Some Ironies of Modernity, 1883-1945," *Science in Context* 11 (1998), pp. 545-565.

44) Jennifer Robertson, "Eugenics in Japan: Sanguinous Repair," in Alison Bashford and Philippa Lev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434-436.

45) 요코하마 다카시는 일본의 우생학 역사를 크게 여섯 시기로 구분한다. 자의적이지만, 일본 우생학을 통사적으로 살피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는 제0기 1900년대 이전 잡혼론 등 우생학 도입의 맹아적 사상, 제1기 1900-1910년대 언론과 번역적 담론 중심의 우생학 도입기, 제2기 1920년대 잡지 매체를 통한 우생학 운동의 본격화, 제3기 1930년대-1948년 우생법안의 제출과 「국민우생법」성립, 제4기 1948년-1960년대 「우생보호법」의 성립과 전개, 제5기 1960년대-현대 신우생학의 도입과 전개로 구분짓는다. 요코하마 다카시, 『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41-45쪽.

출간된 *じんせい*(『人性』, 1905-1918, 부제 *der Mensch*)는 스펜서류의 사회화론과 서구의 지적 흐름을 주로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우생담론이 자연스럽게 대중을 향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잡지는 독일 인종위생론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정치인류학 평론』(*Politish Anthropologische Revue*, 1902창간)을 참고하여 간행한 것이었다. 이 잡지의 주간이었던 후지카와 유(富士川遊)는 인류의 신체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정신 작용을 탐구하고, 국민의 사회적·정신적 생활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인성학(人性學)이라 명명하고, 위생학을 인류의 삶 전반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특히 사회위생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사회위생이란 식품, 의복, 주거, 직업, 교통 등의 여러 사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종위생의 관점에서 인류의 생리학적 상태, 즉 정신적·신체적 소질을 개량하고 완비시킬 것을 연구함으로써 인종 보존과 발육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⁴⁶⁾

그는 독일의 *Rassenhygiene*를 번역하여 인종위생이란 표현을 썼고, 이는 독일의 인종위생학자인 플뢰츠(A. Ploetz)의 영향이었다.⁴⁷⁾ 후지카와의 인종위생에 대한 주장은 19세기말부터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신일본인(New Japanese)론과도 관련이 있다. 신일본인 창조는 서양인들과 경쟁하고, 후일 등장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었다. 이는 일본에서 우생학과 민족주의, 그리고 식민주의가 쉽게 연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일

46) 富士川遊, 『人性』, 『人性』(1905.04), pp. 8-10, 같은 책, 79-82쪽에서 재인용.

47) 플뢰츠의 핵심 주장은 역도태였다. 일본의 많은 우생론자들도 역도태에 기초하여 우생 담론을 수용하고, 확대해갔다. 플뢰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lfred Ploetz, "Die Tüchtigkeit unsrer Rasse und der Schutz der Schwachen," vol.1 in *Grundlinien einer Rassenhygiene* (Berlin, 1895).

본 우생론자들은 적격자(the fit)와 부적격자라는 서양식 구분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인종(race)이라는 단어보다는 *민족*(民族)란 용어가 개념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다. 물론 *인종*(人種)도 병행 사용되었으나, 대중적으로는 Volk에 해당하는 민족이 사회적·표현형적 의미를 담고 있는 Rasse보다 더 익숙했던 것이다. 일본 우생학이 민족위생의 측면에서 진행된 것은 이런 인식과 독일의 영향이 컸다.⁴⁸⁾

일본 우생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20년대 전후부터였다. 이 시기에는 우생학 관련 잡지가 속속 창간되고, 우생학 단체들이 결성된다. 이 때 창간된 잡지들은 주로 서구 담론을 번역하여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1916년 나가이 히소무(永井潛)가 보건위생조사회를 통해 우생학의 정책화를 주장한 이래, 1917년에는 대일본우생회가 결성되었다. 1924년에는 고토 류키치(後藤龍吉)가 일본 우생학협회를 설립해 기관지 『유제닉스』(ユージュエニックス, 1924)를 발간했다. 1925년에 『優生學』으로 개칭한 이 잡지는 1943년 4월에 폐간될 때까지 20년간 발행했다. 1926년에는 일본우생운동협회를 설립한 이케다 시게노리(池田林儀)가 기관지 『우생운동』(1926-1930)을 발간했다.⁴⁹⁾ 1930년에는 독일 유학을 다녀온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 교수 나가이 히소무가 중심이 되어 일본민족위생학회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기존의 우생학 단체들보다 규모가 컸고, 계몽 활동과 정치 활동에 대한 영향력도 컸다. 1931년 3월에 창간한 『민족위생(民族衛生)』은 현재까지도 발간하고 있고, 일본의 단종법을 기안하고, 발의한 것은 대부분 이 단체에서 한 것이었다.⁵⁰⁾

48) Jennifer Robertson, *Eugenics in Japan*, pp. 430-431.

49) 이지형,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일 한센병소설」, 『비교일본학 제39집(2017.6)』, 291쪽.

50) 요코하마 다카시, 『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416쪽.

이런 경로를 거치며 발전한 일본 우생학 운동은 1930년대 이르러 우생학적 혼인 문제에 집중한다. 이즈음 미국이나 독일처럼 우생학 결혼 상담 센터가 개소되고, 우생학적 결혼에 대한 관심이 점증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결혼-여성 건강-모성보호라는 테마가 착종된다. 동시에 유전적 장애와 정신이상, 범죄 행동,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 환자, 부락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도 진행되었다. 1940년에 공포된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 법은 국가가 개인의 생식 자율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단종이 일본에서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합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민우생법은 1940년 5월 통과하여 194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1933년 독일에서 제정된 법과 미국 단종법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제1조에서 법 제정 목적을 악질 유전성 질환의 소질을 가진 자의 증가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질을 가진 사람의 수를 증가시켜 국민 전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⁵¹⁾ 제3조 1항에서 5항까지 단종 대상으로 유전성 정신병과 정신박약, 그리고 성 질환을 명시하고 있고,⁵²⁾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유전성 질환 유무를 조사하며, 이들의 결혼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우생법은 단종 대상을 유전적 요인에 한정하고 있지만, 내용과 목적면에서 미국이나 독일의 그것과 별반 차이는 없었다.

51) 第一条 本法は悪質なる遺伝性疾患の素質を有する者の増加を防遏(ボウアツ)すると共に健全なる素質を有する者の増加を図り以て国民素質の向上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國民優生法(昭和15年法律第107号), 1940.

52) 第三条 左の各号の一に該當する疾患に罹れる(カカレル)者は其の子又は孫, 医学的經驗上同一の疾患に罹る虞(オソレ)特に著しきときは本法に依り優生手術を受くることを得(ウ), 但し其の者特に優秀なる素質を併せ有すと認められるときは此の限(カギリ)に在らず, 一 遺伝性精神病 / 二 遺伝性精神薄弱 / 三 強度且悪質なる遺伝性病的性格 / 四 強度且悪質なる遺伝性身体疾患 / 五 強度なる遺伝性畸形。國民優生法(昭和15年法律第107号), 1940.

우생론자들은 국민우생법이 유전적 질병에 한정된 것에 불만이 있었고, 이후 이른바 확장우생주의, 즉 유전병에 한정하고 않고 단종 대상을 넓히는 입장에 기초하여 1948년 우생 보호법(優生保護法)이 제정되었다. 1948년 7월에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된 우생보호법은 제1조에서 “우생학적 차원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⁵³⁾으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앞선 국민우생법이 유전성 질환자들의 단종에 한정했던 것에 비하여, 우생보호법은 단종 대상과 목적이 더욱 확장된 것이다. 제2조 2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12조에서는 낙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라는 이름아래 단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⁵⁴⁾ 제3조에서는 단종 대상이 국민우생법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유전성 질환에 걸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혈족이 갖고 있는 유전성 질환, 한센병 환자, 모체가 위험할 경우 등을 단종 대상에 포함시켰다.⁵⁵⁾ 법의 맨 끝 별표에는 국민우생법에는 없었던 구체적인 유전

53) 第一条 この法律は、優生上の見地から不良な子孫の出生を防止するとともに、母性の生命健康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優生保護法(1948).

54) 第二条 2 この法律で人工妊娠中絶とは、胎児が、母体外において、生命を保続することのできない時期に、人工的に胎児及びその附属物を母体外に排出することをいう。第十二条 都道府県の区域を単位として設立せられた社団法人たる医師会の指定する医師(以下指定医師という)は、第三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の一に該当する者に対して、本人及び配偶者の同意を得て任意に人工妊娠中絶を行うことができる。優生保護法(1948).

55) 第三条 医師は、左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に対して、本人の同意並びに配偶者(届出をしないが事実上婚姻関係と同様な事情にある者を含む。以下同じ)があるときはその同意を得て、任意に、優生手術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未成年者、精神病者又は精神薄弱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一 本人又は配偶者が遺伝性精神変質症、遺伝性病的人格、遺伝性身体疾患又は遺伝性奇形を有しているもの / 二 本人又は配偶者の四親等以内の血族関係にある者が、遺伝性精神病、遺伝性精神薄弱、遺伝性精神変質症、遺伝性病的人格、遺伝性身体疾患又は

질환의 명칭을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명시했다.⁵⁶⁾ 그리고 법의 마지막에 그 밖의“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질환”(その他厚生大臣の指定するもの)을 부가함으로써 단종 대상은 임의적 확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대상 질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생수술이 필요하고, 공익적 이유라면 배우자나 본인 동의가 없어도 단종 수술을 개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본에서 네거티브 우생학이 공식화되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우생보호법은 국민 생활의 궁핍을 이유로 출생조절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인위적 불임과 인공임신중절을 합법적인 행위로 정당화했다. 이는 일본 우생학이 미국의 캐리 벅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공익을 명분으로 국가가 개인의 생식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즉 민족에 대한 강조와 모성 보호는 나치식 인종 차별이나 미국식 강제 단종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은폐시키는 보호 장치에 불과했던 셈이고, 일본에서도 우생학은 국가주의의 첨병 역할을 했다.

모든 질환을 망라해 국민우생법에 의한 단종수술의 건수는 1941-1947년 사이 총 538건이었고,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에 의해서는 1996년 6월 폐지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대략 1만 6,520건의 강제 불임 외과 수술을 포함한 약 84만 5000건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⁷⁾ 당시 단종 수술을 받은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여성이었다. 단종 수술을 포함한 반

遺伝性奇形を有し、且つ、子孫にこれが遺傳する虞れのあるもの / 三 本人又は配偶者が、癩疾患に罹り、且つ子孫にこれが伝染する虞れのあるもの / 四 妊娠又は分娩が、母体の生命に危険を及ぼす虞れのあるもの / 五 現に数人の子を有し、且つ、分娩ごとに、母体の健康度を著しく低下する虞れのあるもの。優生保護法(1948).

56) 유전성 정신증, 유전성 정신박약, 악성 유전성 정신이상증, 악성 유전성 병적 성격, 악성 유전성 신체질환, 그리고 유전성 기형으로 분류하고, 정신분열증부터 소두증에 이르기까지 56가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질환명을 명시했다. 優生保護法(1948).

57) 요코하마 다카시, 『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297쪽.

인권적 조항은 모체보호법(母體保護法)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폐지되었다. 일본의 우생학은 이후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⁵⁸⁾ 일본을 살펴본 이유이다.

IV.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복지국가에서도 우생 정책은 생물학적 부적격자로 정의된 사람들의 재생산을 규제했을 뿐 아니라 적격자의 재생산을 장려했고,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가족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폈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에서 강제 불임시술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이는 민족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부모가 되기에 부적격인 사람들에게 불임시술을 하는 것은 국가가 짊어지는 부담을 덜어주었고, 적격자에게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다.⁵⁹⁾ 이들 국가들의 우생 정책 시행은 1970년대 독일 소장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치 잔학 행위에 대한 재조명 과정에서 알려졌다.⁶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 제도 구축에 성공했고, 국가 주도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안정적으로 혼합했으며, 사회

58) 한국의 우생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1930년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의사학』 29 (2006), 133-155쪽; 신영전·정일영, 「미수(糜壽) 이갑수(李甲秀)의 생애와 사상: 우생 관련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의사학』 28:1 (2019), 43-88쪽.

59) 힐러리 로즈·스티븐 로즈, 김명진·김동광 옮김,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 포 뇌』(서울: 바다, 2015), 181-182쪽.

60) Gilles Jeanmonod, "Aspects et developpements recents de l'histoire de l'eugenisme," *Gesnerus* 60 (2003), p. 84

적 권리 보장의 최전선에 섰던 나라였다는 것이 그간의 서사였다. 그러나 스웨덴 단종법 시행 역사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연구가 확장되었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모두 단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음이 밝혀졌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였다.⁶¹⁾

이는 우생학이 세계 운동으로서, 그리고 이념에 관계없이, 매우 보편적으로 세계사에 등장했던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과 과학, 진보,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던 나라들이었다. 핀란드처럼 일부 이민자들이 있는 나라도 있었지만, 이들 나라들은 민족적·문화적·종교적·사회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질한 인구 구성을 갖고 있었다.⁶²⁾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우생학적 단종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 저출산율, 이민, 그리고 노르만 민족주의(Nordic nationalism)가 얽혀 있었다.⁶³⁾ 이들 국가에서는 1900년 즈음 우생 담론이 독일과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점진적으로 우생 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전한 우생학적 조치들은 특히 학습장애(learning difficult)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우려와 관련을 맺고 있다. 19세기 말 이들 나라에서는 근대적인 교육과 치료가 학습장애 감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오히려 성적 방종과 무책임성의 상징이 되었고,

61) Gunnar Broberg and Nils Roll-Hansen, *Eugenics and the Welfare State: Sterilization Policy in Denmark, Sweden, Norway, and Finland* (East Lansing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96).

62) Ibid., pp. 1-8.

63) Frank Dikotter, "Race Culture: Recent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Eugenics,"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3:2 (April 1998), p. 469.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더구나 이들의 증상이 세대를 거쳐 유전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이는 자연스레 노르딕 인종의 우수성 보존이나 민족주의적 정서와 결합하게 되고, 우생학이 정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⁶⁴⁾ 이들 나라에서 우생 운동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정신 건강에 초점을 두고 의학적 차원에서 연구와 실천 방법을 고민했던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10년대를 지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 우생학 운동은 자유주의적 사회개혁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사회 개혁가들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했다.⁶⁵⁾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이상과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천착했고, 우생 정책이 복지국가 건설의 주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덴마크 사회 민주주의자였던 스테잉케(K. K. Steincke)는 부적격자에 대한 사회 원조와 네거티브 우생학을 조화시킬 공리를 했었으나, 결론적으로 우생학이 부적격자나 희망없는 사람들의 수적 증가를 막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테잉케와 같은 엘리트들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보호소내 성적 일탈은 부도덕한 행위로서 책임있고 인도주의적인 해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복지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안하면서, 유전주의와 맬더스 인구론에 천착하여 우생 정책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신 질환자들의 결혼을 법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스테잉케의 주장이 갖는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보호소 내의 정신 질환자와 아동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64) Anne Kerr, *Genetic Politics*, pp. 47-49.

65) Mattias Tyden, "The Scandinavian States: Reformed Eugenics Applied," in Alison Bashford,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pp. 365-366.

자 또는 성폭력범이나 성적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자에 한해서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단종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⁶⁶⁾ 마침내 1926년 덴마크 단종법(the Sterilization Act)이 제안되었고, 1929년 최종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신 질환자나 성폭력범에 대한 거세(castration)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이 법은 모든 정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다. 뒤이어 정신 장애법(Mental Handicap Act, 1934)이 규정되었다. 이 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지체와 보호소 격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단종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했다. 즉 정신지체자의 경우, 아동을 양육할 만한 상태가 되지 않거나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한하여 강제 구금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여유롭게 감독을 받기 원할 경우에 단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 장애로 의심되는 경우를 보고하는 것은 선생이나 의사, 사회 당국의 의무였다. 이후 이 법들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1950년까지 덴마크에서는 단종된 사람들 가운데 78%가 정신 지체에 해당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 두 배 정도 많았다.⁶⁷⁾ 덴마크

66) 당시 스테잉케가 작성한 보고서는 Social Relief of the Future(1920)였다. Bent Sigurd Hansen, "Something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Eugenics and the Ascent of the Welfare State," pp. 9-76, Gunnar Broberg, *Eugenics and the Welfare State*, pp. 27-30.

67) [표 2] 정신지체로 인한 덴마크에서의 단종

시기	학습장애를 가진 여성	학습장애를 가진 남성	학습장애가 없는 여성	학습장애가 없는 남성	총계
1929-1934	84	19	4	1	108
1935-1939	825	375	150	30	1,380
1940-1945	1,000	500	510	110	2,120
1946-1950	869	465	902	96	2,332
총계	2,778	1,359	1,566	237	5,940

T. Kemp, *Arvehygiene*, Kobenhavns Arsskrift (Copenhagen: Kobenhavns Universitet, 1951), p. 45, Anne Kerr, *Genetic Politics*, p. 54에서 재인용.

크에서 제정된 단종법은 대상이나 목적에서 사실상 독일이나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점차 학습 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이나 시각 장애같은 신체적 질환, 알코올 중독자나 상습 범죄자같은 사회적 특질에 해당하는 일탈 행동도 단종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⁶⁸⁾

노르웨이에서는 1934년 단종법(the Sterilization Law)이 제정되었다. 노르웨이에서도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로 인한 학습장애를 가진 이들이 단종의 주요 대상이었으나, 부랑자, 절도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범죄자들을 유전적 요인의 결과로 인식하여 단종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장기간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와 더불어 1930년대 확산된 퇴화의 공포에 기인한다. 노르웨이에서 학습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자발적 단종과 강제 격리의 대상이었고, 이후 인종 퇴화 방지를 위한 예방책으로 성폭력범의 거세를 단종 대상에 포함했다. 물론 단종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피임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었다. 아동 양육 곤란자나 유전적 질병 가능성 유무가 단종의 기준이었다. 만일 정신이상자라도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단종 대상에서 제외했다.⁶⁹⁾ 나치가 점령한 기간(1943-1945) 노르웨이에서는 단종 대상이 확대되고, 그 숫자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나치의 인구 정책과 노르웨이 우생학이 조응한 결과였다. 1934년의 노르웨이 단종법은 1960년대 인권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면서 다소 변경을 거쳤지만, 1977년까지 유지되었고, 총 40,891명이 공식적으로 단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⁰⁾ 노르웨이에서의 우생학과 단종법은 복지국가를 향한 포

68) Bent Sigurd Hansen, *Something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pp. 37-43.

69) Nils Roll-Hansen, "Norwegian Eugenics: Sterilization as Social Reform," pp. 151-194 in Gunnar Broberg, *Eugenics and the Welfare State*, pp. 173-176.

70) [표 3] 노르웨이에서의 단종, 1934-1976

괄적인 사회개혁의 한 부분이었고, 1930년대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강조 하던 흐름에서 점차 사회의 이익을 강조하는 변화가 빚어낸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1926년 우생학 입법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34년 단종법(the Sterilization Bill)이 의회를 쉽게 통과해서 1935년부터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의 우생 정책의 특이성은 핀란드 사회의 엘리트였던 소수의 스웨덴어 사용자의 영향이 컸고,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핀란드 스웨덴어 사용자 공중보건 협회(Association of public health in Swedish-speaking Finland)가 구성되면서 우생 운동이 촉발되었다. 이 협회는 미국의 대표적 우생론자였던 대븐포트(C. B. Davenport)의 주장에 기초하여 설립되었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핀란드내 스웨덴어 사용자의 인구 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처음에는 포지티브 우생학 차원에서 교육이나 간호, 모성보호를 강조했지만, 이후 국제적인 우생 운동과 보조를 맞추면서 유전주의적 입장에서 단종을 논하기도 했다.⁷¹⁾ 다른 특이성은 핀란드가 1809년부터 1918까지 러시아 제국

시기	단종 수	여성 비율(%)	년 평균
1934.6.1. -1942.12.31	653	83	76
1943.1.1. -1945.5.8. (나치 점령기)	487	84	207
1945.5.8. -1954.6.30	2,569	91	283
1954.7.1. -1965	8,005	93	696
1966-1976	29,177	62	2,652
1934-1976	40,891	75	951

K. Evang, *Sterilisering etter lov av 1. juni 1934 om adgang til sterilisering m.v.* (Sarpsborg: F. Varding, 1955), p. 13; The Norwegian Parliament, *Government Bill 1976/1977 no 46*, "Om lov om sterilisering m.v.," 16, Nils Roll-Hansen, *Norwegian Eugenics*, p. 178에서 재인용.

71) Marjatta Hietala, "From Race Hygiene to Sterilization: The Eugenics Movement in Finland," pp. 195-258 in Gunnar Broberg, *Eugenics and the*

의 공국(grand duchy of the Russian Empire)으로 남아있던 까닭에 1920년대-1930년대 내내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⁷²⁾ 우생 정책은 이 과정에서 국가 정체성 형성의 한 도구로 인식되었고, 1920년대 이후 핀란드어 사용자가 우생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종 퇴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의 단종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핀란드의 단종법은 1930년대의 경제적 불황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당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가족이 점차 증가하여 인구 전체의 약 10%가 정부 원조를 받고 있었다. 핀란드에서는 독일법을 참고하여, 간질, 유전적 청각 장애, 범죄성, 알코올 중독 그리고 다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자발적 단종을 허용하고, 특히 학습 장애와 관련이 깊은 천치, 치우,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주요한 단종 대상이었다.⁷³⁾ 핀란드에서는 생물과학이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는 정신 질환, 간질, 알코올 중독, 그리고 범죄성에 대한 유전적 요인을 연구하는 의학적 접근을 중요시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더불어 핀란드에서는 인구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간호를 강조하는 포지티브 우생학과 부적격자에 대한 단종이나 거세같은 네거티브 우생학이 함께 전개되었다.⁷⁴⁾ 핀란드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생적인 우생 담론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⁷⁵⁾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으로 우생학이

Welfare State, pp. 206-215.

72) Ibid., pp. 195-196.

73) Ibid., pp. 215-232.

74) 이후 핀란드 국가 건강부(the National Board of Health)의 주도로 1950년 성범죄나 폭력범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단종법(sterilization act)과 거세법(the Castration Act)이 제정되어 1970년 폐지될 때까지 약 56,075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했다. Ibid., pp. 244-246.

75) Anne Kerr, *Genetic Politics*, pp. 56-57.

정책화된 나라였다. 이는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농업 경제에서 산업 도시국가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루터파 기독교라는 전통적인 종교가 세속화하는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안정화시켜주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20세기 전환기 스웨덴 인구의 약 6분의 1(대략 백만명)이 이민을 가면서 인구 구성에 위기가 찾아왔고, 급속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정신지체와 정신질환, 그리고 범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했다.⁷⁶⁾ 이는 스웨덴의 발전에 위협적이었다. 스웨덴에서는 특히 우월한 노르딕 민족주의가 이미 다윈주의나 사회 다윈주의와 조용하며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종을 논하는 바탕에 있었고, 이는 스웨덴에서 인종 생물학(race biology)이 시작되는 토대가 되었다. 인종 생물학의 등장은 퇴화에 대한 공포와 연관이 있었고,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⁷⁷⁾ 당시 정신과의사였던 페트렌(Alfred Petren)은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부적격한 사람들과 정신 질환자들의 보호 비용을 문제 삼았다. 1923년에는 스웨덴 인종 생물학 연구소(the Institute for Race Biology)가 우생학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1924년에는 국가 건강부(the National Board of Health)에서 위원회를 설립하여 유전적 질병에 한하여 단종을 시행하는 보고서를 입안했다. 이후 스웨덴 단종법(the Sterilization Act)이 1934년에 제정되어 193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부모의 반대나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법에 규정된 단종 대상이고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강제로 법이 적용되었다. 이후 단종 대상은 정신 결함을 넘어 사회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로 확대되었고, 대개 매춘부, 부랑자, 그리고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

76) Gunnar Broberg and Mattias Tyden, "Eugenics in Sweden: Efficient Care," pp. 77-149 in Gunnar Broberg, *Eugenics and the Welfare State*, pp. 77-78.

77) Ibid., pp. 81-91.

(workshy)처럼 노동생산성이 없는 이들이 단종 대상에 포함되었다. 1941년 제정된 단종법에서는 대상이 더 확대되었고, 만일 여성이 의학적인 이유로 자발적인 단종을 원할 경우에도 허용하였다.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우, 특수학교에 보내지거나 병원이나 보호소 퇴원 조건으로 단종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낙태도 비슷한 이유로 제안했다.⁷⁸⁾ 1975년까지 법이 유지되면서 공식적으로 총 62,888명이 단종을 당했고, 그 가운데 93%가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하층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집시같은 방랑자(Tattare)나 사회의 주변인들 역시 단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스웨덴에서 단종법 시행은 스칸디나비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포괄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적 비용 감소와 의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효율적인 사회 개혁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점이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우생 정책은 인종차별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고, 자발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인도주의적 행위임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복지국가 건설을 명분삼아 의학적인 소견으로 포장된 인권 유린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우생학이 나치식 네거티브 우생학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⁷⁹⁾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시행된 단종법의 주요 대상이 단순히 정신 질환자뿐만 아니라 빈곤자, 도덕적 문란 행위자, 그리고 집시같은 이주 부랑자 등 사회적 부적격자까지 포함하고 있었고,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에서 우생학적 단종을 시행했다는 점, 그리고 주로 부적격자의 제거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우생학이 갖는 폭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다만, 그것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명분 속에 은폐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78) Anne Kerr, *Genetic Politics*, pp. 57-58.

79) Mattias Tyden, *The Scandinavian States*, pp. 368-371.

V. 나오며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우생학은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수용되었다.⁸⁰⁾ 영국의 경우는 계급이 중요했고, 미국은 인종, 독일이나 일본은 민족,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복지라는 화두가 우생학과 결합했다. 우생학의 다양성을 논하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바대로 나치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생학이라는 과학이자 이념이 남긴 폭력적인 흔적을 국가(인종/민족)주의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기 위함이다. 다 알다시피, 우생학은 나치의 전유물도 아니고, 나치의 몰락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았다. 국가주의라는 틀 속에서는 언제나 개인의 복지보다 공동체의 이익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누군가는 이득의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⁸¹⁾ 손실은 당연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몫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복리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지 못한 나라들, 이를 테면 문화적·민족적으로 다양하고 인종 이데올로기가 약해 외래적 영향보다는 자생적인 우생 담론이 발전하여, 국가 재생의 주요한 기초가 되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나⁸²⁾ 유전과 양육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하며 부적격자의 건강 증진과 적격자의 확산을 조화시키려했던

80) Robert Nye, "The Rise and Fall of the Eugenics Empire: Recent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Bio-Medical Thought in Modern Society," *Historical Journal* 36 (1993), pp. 687-700.

81) 힐러리 로즈,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180쪽.

82) Nancy Leys Stepan, "The Hour of Eugenics": *Race, Gender, and Nation in Latin America* (N.Y.: Cornell Univ. Press, 1996[5th])

프랑스⁸³⁾같은 나라들은 다소 결이 달랐지만, 그들도 국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요컨대, 연구 대상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유전적·사회적·도덕적 부적격자 모두를 우생학적 조치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정신이나 성(性), 그리고 범죄가 주된 단종 대상의 요소였다는 점, 인종주의나 민족주의도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생학적 법률에 녹아들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인종 퇴화를 우려하여 주로 네거티브 우생학을 활용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우생학적 법률을 제정한 국가들은 국가 통치 수단으로 하나로 우생학이라는 과학 지식을 이용했고, 이는 인구 집단의 생물학적 질 관리를 법률 강제의 형식으로 실현함으로써 생물학적 국가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이는 오늘날의 생명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⁸⁴⁾ 우생학은 생의학 지식과 연동된 국가 정책이 생명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 권력과 결합하여 우리 삶을 지배해가는 현실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주제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유전 연구 분야에서의 과학적 진보는 인간 재생산에 대한 지식을 늘려왔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그

83) Anne Carol, *Histoire de l'eugenisme en France: les medecins et la procreation* (Paris, 1995).

84)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정치학의 포괄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생학과 생명정치가 갖는 상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간 몸이나 생명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실천이 역사적 분석의 주제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생명정치학 연구는 크게 1) 신다윈주의 이론을 수용하여 인간 존재의 발달과 국가, 사회의 기원에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향, 2) 정치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동물행동학과 사회생물학의 개념과 성과를 수용, 3) 생리학적 요인과 그것이 정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에 관심, 4) 인간 본성에 개입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현실의 정치문제(생명정책, biopolitics)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생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테마들이다. 토마스 렘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40-41쪽.

룹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의 배제라는 인식 역시 증가시켰다. 과거 우생학을 비판적으로 살펴봐야하는 이유이다.

(2019.04.18 투고 / 2019.05.27 심사완료 / 2019.05.27 게재확정)

[Abstract]

Eugenics, State, and Bio-politique, 1865-1948

Kim, Ho-yeon

This article examined the eugen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Japan, and Scandinavian countries, which used eugenics as a knowledge of securing state fitness to achieve so-called the biological statism.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eugenic laws of each country. The law is a good basis to figure out that the scientific knowledge of eugenics and the biological quality management for the people are important as a national governing strategy. This study shows that eugenics has a wide variety of ideologies, powers, and practices. However, the research object countries were the same in terms of national efficiency - social progress - biological quality of population - science knowledge - eugenics - law and practice. Specifically, the countries studied had the following common features. The main object of the eugenic law was not only the genetic infertility but also the social · moral disqualification, the fact that the forced infertility treatment was mostly mental illness(or the feeble-minded), the racism had permeated the eugenic law, and positive eugenics to improve race and negative eugenics to prevent racial decline at the same time. In conclusion, all countries that have enacted eugenic laws have used the scientific knowledge of eugenics as one of the national governing instruments, demonstrating the biological na-

tionalism aspect by realizing the biological quality control of population groups in the form of a law enforcement. In this context, history of eugenics in this countries is an example of bio-politics.

□ Keyword

Eugenics, Biological Statism, America, England, Germany, Japan, Scandinavian States

[참고문헌]

1. 단행본

Alfred Ploetz, “Die Tuchtigkeit unsrer Rasse und der Schutz der Schwachen,” vol.1 in *Grundlinien einer Rassenhygiene* (Berlin, 1895).

Alison Bashford and Philippa Lev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Benno Muller-Hill, *Murderous Science: Elimination by Scientific Selection of Jews, Gypsies, and Others, Germany 1933-194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D. G. Prichard, *Education and the Handicapped 1760-196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Ernst Haeckel, *Naturliche Schopfungsgeschichte* (Berlin, 1868).

George L. Mosse, *Toward the Final Solution: A History of European Racism* (London: J. M. Dent and Sons, 1978).

Gotz Aly, Peter Chroust, and Christian Pross, *Cleansing the Fatherland: Nazi Medicine and Racial Hygien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Gunnar Broberg and Nils Roll-Hansen, *Eugenics and the Welfare State: Sterilization Policy in Denmark, Sweden, Norway, and Finland* (East Lansing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96).

Karen J. Schaffner (ed.), *Eugenics in Japan* (Fukuoka: Kyushu University Press, 2014).

Michael H. Kater, *Doctors Under Hitler*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 Michael Weiner, ed., *Japan's Minority: The Illusion of Homogeneity* (New York: Routledge, 2009).
- Richmond Mayo-Smith, *Emigration and Immigration* (New York: Scribner's, 1908).
- Robert N. Proctor, *Racial Hygiene: Medicine Under the Naz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Ruth Clifford Engs, *The Eugenics Movement: An Encyclopedia*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5).
- Tiana Norgren,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Yasuko Takezawa, ed., *Racial Representations in Asia* (Kyoto: Kyoto Univ. Press, 2011).
- Yuehtsen Juliette Chung, *Struggle For National Survival: Eugenics in Sino-Japanese Contexts, 1896-1945*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2).
- 김병수, 『한국 생명공학 논쟁』, 서울:알렙, 2014.
- 김호연,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서울:아침이슬, 2009.
- 김환석 편저,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서울:알렙, 2014.
- 나종일 · 송규범, 『영국의 역사(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藤野豊, 『日本フェシズムと優生思想』, かもがわ出版, 1998.
- 박진빈, 『백색국가건설사』, 서울: 엘피, 2006.
- 廉雲玉, 『イギリス優生学運動と母性主義 -1907年から1930年までの「優生協会」の活動を中心に-』, 東京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4.
- 염은옥,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서울: 책세상, 2009.
- 鈴木善次, 『日本の優生學』, 三共出版, 1983.

- 요코하마 다카시, 안상현 · 신영전 옮김, 『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9.
- 최재희, 『영국 노동당 창당기 사회주의 진영의 민주주의관』(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1).
- 토마스 렘케, 심성보 옮김,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15.
- 한국서양사학회, 『몸으로 역사를 읽다: 몸과 생명정치로 본 서양사』, 서울: 푸른역사, 2011.
- 힐러리 로즈 · 스티븐 로즈, 김명진 · 김동광 옮김, 『급진과학으로 본 유전자 세포 뇌』, 서울: 바다, 2015.

2. 논문

- Calvin Coolidge, “Whose Country Is This?,” *Good Housekeeping* 72 (1921).
- David Mitchell and Sharon Snyder, “The Eugenic Atlantic: Race, Disability, And The Making of An International Eugenic Science, 1800–1945,” *Disability & Society* 18 (2003).
- Deborah Harrett and Charles Kurzman, “Globalizing Social Movement Theory: The Case of Eugenics,” *Theory and Society* 33 (2004).
- Dorothy Porter, “Enemies of the Race: Biologism, Environmentalism, and Public Health in Edwardian England,” *Victorian Studies* 34 (1991).
- Frank Dikotter, “Race Culture : Recent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Eugenics,”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3:2 (April 1998).
- Gilles Jeanmonod, “Aspects et developpements recents de l’histoire de l’eugenisme,” *Gesnerus* 60 (2003).

- Harry H. Laughlin, *Biological Aspects of Immigration :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House of Representatives Sixty-Sixth Congress Second Session April 16-17, 1920* Statement of Harry H. Laughlin [graphic]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26432 (1921).
- Hiram M. Stanley, "Our Own Civilization and the Marriage Problem," *The Arena* 2 (1890).
- J. B. Peabody, "Putting It Up to Philanthropy," *The Survey* 29 (1912).
- Jennifer Robertson, "Eugenics in Japan: Sanguinous Repair," in Alison Bashford and Philippa Lev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Eugen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o Youngran, "Eugenics, Public Health, and the Control of Tuberculosis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한국과학사학회지』 15 (1993).
- R. D. Ward, "Eugenic Immigration: The American Race of the Futur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outhern States for Its Formation: The 'Survival of the Fittest,'" *American Breeders Magazine* 4:2 (1913).
- Robert Nye, "The Rise and Fall of the Eugenics Empire : Recent Perspectives on the Impact of Bio-Medical Thought in Modern Society," *Historical Journal* 36 (1993).
- Sheila Faith Weiss, "The Race Hygiene Movement in Germany 1904-1945," in Mark B. Adams (ed.), *The Wellborn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Song Sang-yong, "Haeckel's Monistic Philosophy of Nature," 哲學研究 11 (1976).
- Sumico Otsubo and James R. Bartholomew, "Eugenics in Japan: Some Ironies of Modernity, 1883-1945," *Science in Context* 11 (1998).
- Suzuki Zenji "Geneticists and the Eugenics Movement in Japan," *Japanese Studies in the History of Science* 14 (1975).
- 강태웅, 「우생학과 일본인의 표상-1920-40년대 일본 우생학의 전개와 특성」, 『일본학연구』 38 (2013).
- 김호연, 「19세기말 영국 우생학의 탄생과 사회적 영향 - 국가적 효율과 우생학적 건강 -」, 『이화사학연구』 36 (2008).
- 김호연, 「20세기 초 미국의 과학과 법」, 『서양사학연구』 26 (2012).
- 김호연, 「과학의 정치학: 독일의 인종위생(Rassenhygiene)」, 『강원인문논총』 18 (2007).
- 김호연, 「미국 우생학 운동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 1900-1940」, 『미국사연구』 16 (2002).
- 김호연 · 박희주, 「우생학의 다층적 접근: 유전, 환경, 그리고 이념」, 『환경법연구』 27-2 (2005).
- 민유기, 「은밀하지만 공적인 몸에 대한 역사가들의 질문들」, 『서양사론』 112호 (2012).
- 차利鎭,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GHQ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 (2018).
- 박지현, 「양차대전의 생명담론과 프랑스 우생학」, 『한국서양사학회학술대회발표집』 12 (2008).
- 박진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미국의 우생학 연구」, 『서양사론』 제90호 (2006).

- 松原洋子, 「〈文化國家〉の優生法」, 『現代思想』 25:4 (1998).
- 松原洋子, 「民族優生學保護法案と日本の優生學の系譜」, 『科學史研究』 II, 36卷, 1997.
-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운동의 전개와 성격-1930년 『우생(優生)』을 중심으로」, 『의사학』 29 (2006).
- 신영전 · 정일영, 「미수(糜壽) 이갑수(李甲秀)의 생애와 사상: 우생 관련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의사학』 28:1 (2019).
- 염운옥, 「20세기 초 잉글랜드의 이혼법 개정과 우생학」, 『역사비평』 64 (2003).
-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단종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12 (2004).
- 염운옥, 「우생학과 여성」, 『영국연구』 13 (2005).
- 이성숙, 「산아제한과 페미니즘 -애니 베상트 사건과 맬서스주의」, 『영국연구』 8 (2002).
- 이성숙, 「영국 빅토리아 시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적 담론: 남녀클럽 (1885-1889)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 (2004).
- 이지형, 「우생학, 한센병 그리고 한일 한센병소설」, 『비교일본학 제39집』 (2017.6).
- 이태숙, 「100년 전의 국가적 표어들: 영국의 “국가효율” 對 일본의 “國粹保存”」, 『영국연구』 창간호 (1997).
- 정세권, 「인간에 대한 “미국식 과학”의 형성: 대번포트(Charles Benedict Davenport)의 우생학」,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0권 1호 (2008).

3. 법률

Buck vs. Bell Case, 1927, 274 U.S. 200.

Connecticut General Statute 1354-1356 (1895).

Connecticut General Statute 2691(1918).

Johnson Act (1921).

Johnsen Reed Act (1924).

Das Gesetz zur Verhutung erbkranken Nachwuchses(1933).

Nuremberg Law(1935, Blood Protection Law, Marital Health Law,
Reich Citizenship Law).

Virginia Acts of Assembly, Chap. 394, 1924[S B 281](1924.3.24. 통과).

国民優生法(1940).

優生保護法(1948).